

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 ④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 [편집자 주]

<p>글 쓰는 순서</p> <p>II. 건설관련 법령 벌칙규정</p> <p>1. 벌칙의 종류</p> <p>2.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칙</p> <p> 1) 건설업의 등록, 영업범위 및 신고사항</p> <p> 2)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p> <p> 3) 건설공사 시공 및 기술관리 지난 호</p>	<p>4)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입찰질서 문란행위 등</p> <p>5) 건설기술관리법 등 타법령 및 기타사항</p> <p>6) 양벌규정</p> <p>7) 건설업관리지침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이번 호</p> <p>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식의 벌칙</p> <p> 1) 하도급법 적용범위 다음 호</p>
---	---

7) 건설업관리지침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기 준	건설경제담당관실-3245 (2005. 7. 22)
<p>○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p>	<p>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영업정지처분</p> <p> (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p> <p> (나)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p>

기 준	건설경제담당관실-3245 (2005. 7. 22)
	<p>체납된 때</p> <p>(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재 처분하는 때</p> <p>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②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p> <p>③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p> <p>(라) 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10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있는 때</p> <p>(2) 과징금부과</p> <p>(가)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p> <p>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p> <p>(2) 법 제83조8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법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83조제2호의 사유가 함께 계류되어 있는 때</p>
<p>○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한 결정 기준</p>	<p>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p> <p>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기간 중 그 2분의1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감경사유</p> <p>(가) 처분횟수</p> <p>-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과태료 부과 제외)</p> <p>(나) 위반동기</p> <p>-법령해석상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p> <p>(다) 위반내용</p> <p>-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허위로 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p> <p>(2) 가중사유</p> <p>(가) 처분횟수</p> <p>-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과태료부과 제외)</p>

기 준	건설경제담당관실-3245 (2005. 7. 22)
<p>○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한 결정 기준</p>	<p>(나)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p> <p>(다)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p> <p>(3) 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감경 또는 가중되는 각 사유마다 영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나.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금액 중 그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감경 및 가중사유 영업정지기간 결정기준의 감경 및 가중사유와 같다.</p> <p>(2) 감경 및 가중의 비율 감경 및 가중사유마다 별표6에 정한 과징금의 1/6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p> <p>(3) 과징금의 산정 (가) 영 별표6-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정액제)은 위 (2) 감경 또는 가중의 율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한다. (나) 영 별표6-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포함)의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율은 직선보간법(直隰緝 繭)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떼어 버린다. (다) 직선보간법의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p>
<p>○ 과태료의 결정기준</p>	<p>영 제89조제3항 별표7에서 정한 금액 중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감경사유 (1) 처분횟수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2)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행되는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건설업자의 과실이 경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p>

기 준	건설경제담당관실-3245 (2005. 7. 22)
<p>○과태료의 결정기준</p>	<p>나. 가중사유 (1) 처분횟수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된 때</p> <p>다. 감경 또는 가중의 율 감경 또는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한 금액의 1/4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p>
<p>○기 타</p>	<p>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 등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p> <p>다. 위반 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p> <p>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 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p>



피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피자는 원래 이탈리아 농부들이 만들어 먹던 음식이다. 밭에서 땀 흘리며 일 하다가 집에 들어갈 필요조차 없이 맨손으로 열린 집어 먹고 다시 일터로 나가곤 했던 것이다. 이탈리아 중에서도 정통 피자의 발원지는 나폴리다. 나폴리의 정통 피자는 나폴리에서 나는 약초에다 역시 나폴리산 마늘을 넣고, 또 인근 베수비우스(Vesuvius) 화산의 화산재 속에서 재배된 토마토를 섞어야 한다. 이런

토핑을 솔솔 끼얹어 놓고 빵을 구어야 정통 피자로 대우 받는다.

이탈리아 농부들이 먹던 피자가 제법 격식을 갖춘 음식으로 대접받기 시작한 것은 1889년부터다. 그들이 먹었던 피자가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먹는 격식 있는 피자의 원조가 됐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별지 3]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간법의 적용사례

사례1) 법 제16조 위반시, 도급금액이 4억 57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영 업 정 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적용례>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을

$$\frac{\text{구역상한과징금율} - \text{구역하한과징금율}}{\text{구역상한도급금액} - \text{구역하한도급금액}} = \frac{16\% - 24\%}{5\text{억원} - 1\text{억원}} = \frac{-8\%}{4\text{억원}} = -2 \frac{\%}{\text{억원}}$$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text{도급금액} - \text{구역하한도급금액} = 4\text{억}57\text{백만원} - 1\text{억원} = 3\text{억}57\text{백만원} = 3.57\text{억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

$$3.57\text{억원} \times -2 \frac{\%}{\text{억원}} = -7.14\%$$

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

$$24\% - 7.14\% = 16.86\%$$

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4.57\text{억원} \times 16.86\% = 0.770502\text{억원} = 7\text{천}7\text{백}5\text{만}2\text{백만원} \approx 7\text{천}705\text{만원}$$

※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1천원미만은 버림.

사례2) 아래조항 위반시, 재하도급금액이 29억88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영 업 정 지 기 간	과 징 금 의 비 율 (%)			
			5천만원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이상
6. 재하도급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적용례>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을

$$\frac{\text{구역상한과징금율} - \text{구역하한과징금율}}{\text{구역상한도급금액} - \text{구역하한도급금액}} = \frac{4\% - 8\%}{30\text{억원} - 5\text{억원}} = \frac{-4\%}{25\text{억원}}$$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text{도급금액} - \text{구역하한도급금액} = 29\text{억}88\text{백만원} - 5\text{억원} = 24\text{억}88\text{백만원} = 24.88\text{억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

$$24.88\text{억원} \times \frac{-4\%}{25\text{억원}} = -3.9808\%$$

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

$$8\% - 3.9808\% = 4.0192\% \approx 4.019\% (\because \text{건설업관리지침})$$

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29.88\text{억원} \times 4.019\% = 1.2009\text{억원} = 1\text{억}2\text{천}9\text{만원} \approx 1\text{억}2\text{천만원}$$

※ 별표2 나목 비고란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선보간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1억2천9만원)”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1억2천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으로 하게 되므로, 과징금은 1억2천만원이 됨